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조영철 · 김재환

2011. 3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간등록번호 31-9700344-000896-01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2011. 3.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2011년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86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에는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손실보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손실보전 임의조항이 아니라 “보전한다”는 손실보전 의무조항인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가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최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를 겪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용보강을 위해서 2010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보증채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가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국가보증채의 6.8배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나 일반적인 공기업 부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공사채 수요증가로 인해 발행량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일반적인 공공기관 부채보다 좀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해볼 때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서도 국가보증채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보고서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요 약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LH공사 등 10개이며, 채권발행 잔액은 2010년 말 235조원으로 국가보증채의 6.8배임. 손실보전은 정부가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증채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함.

1.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현황

- 공공기관 금융부채 2005년 81.4조원에서 2009년 181.4조원으로 2.2배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부채는 2010년 말 125.5조원으로 부채비율이 559%에 달함
 - 2010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발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사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이 있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법 조항이 있음.
 - 이는 공공기관이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을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정부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하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임.

□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한 검토 필요

- 최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결손을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됨으로써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2.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문제점

□ BIS 산정 시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위험가중치는 국채와 동일한 0%임.

-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자기자본비율(BIS)과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를 계산할 때 국채와 동일하게 위험가중치를 0%로 적용함.
- 2009년 12월 30일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신설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중소기업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BIS 위험가중치가 0%로 낮아지면서, 2010년 11월말까지 채권발행 금리가 0.08%p 낮아지고 금융비용도 낮아짐.

□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잔액은 2010년 말 235.3조원

- 국가채무는 2005년 말 247.9조원에서 2010년 말 400.4조원으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동 기간 동안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2.6배 증가하여 국가채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국가채무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비율은 2005년 36.6%에서 2010년 58.8%로 증가함.

국가채무 · 국가보증채무 · 공공기관 부채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 비율
(단위: 조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 잔액(A)	90.8	123.7	156.8	189.6	206.6	235.3
국가채무(B)	247.9	282.7	299.2	309.0	359.6	400.4
국가보증채무(C)	55.0	36.5	33.1	28.1	29.8	34.8
공공기관 부채(D)	319.2	368.7	433.2	553.1	599.0	
국가채무 대비 비율(A/B)	36.6	43.7	52.4	61.3	57.3	58.8
국가보증채무 대비 비율(A/C)	164.9	338.9	473.7	674.3	693.3	675.6
공공기관 부채 대비 비율(A/D)	28.4	33.6	36.2	34.0	34.5	

주: 2010년 국가채무는 기획재정부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의 자료와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함.

□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규모가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빠르게 증가

- 2005~2009년 동안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규모는 2.3배 증가하여 2005년 말 319조원에서 2009년 말 599조원으로 1.9배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
- 2009년 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잔액 규모 206.6조원은 공공기관 총부채의 34.5%에 달하고 있음.

□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규모는 국가보증채무의 6.8배

-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34.8조원으로 GDP 대비 3%에 달하고 있는데, 국가보증채무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비율은 2005년 1.6배에서 2010년 6.8배로 급증함.
-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정부가 국가보증채무관리제

획을 세우고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국가보증채무의 6.8배에 달하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국가보증채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음.

3. 공공기관 손실보전 조항 관련 법률 개선방안

-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한 관리계획의 국회 제출 필요
 - 최근 공기업 부채가 2005년 98조원에서 2009년 212조원으로 급증하여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발행채권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국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발행채권 규모가 국가보증채무 규모의 6.8배에 달하는 상황임.
 -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해볼 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서도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 개정은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관련 자료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정부 관리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국가재정법 제9조의2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음.
 - 또 다른 방안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를 개정하는 것임.

차 례

요 약 / v

1. 문제 제기	1
2. 공공기관 손실보전 관련 법률 현황	3
3. 정부의 공공기관 손실보전제도 현황과 문제점	6
가. 정부 손실보전 조항과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위험가중치 변화	6
나.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문제점	10
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관리 필요	14
4. 공공기관 손실보전 조항 관련 법률 개선방안	17
<부 록>	20

표 차례

[표 1] 공공기관별 손실보전 관련 법률조항	4
[표 2] 은행과 보험사의 규제자본 수준 비교	7
[표 3]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위험가중치	7
[표 4]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의 연도말 채권발행 잔액	11
[표 5] 공공기관 부채 잔액 현황	12
[표 6] 국가채무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 비율	13
[표 7] 한국토지주택공사 채권발행 계획	14
[표 8] 최근 5년간 국가보증채무 잔액 규모	15
[표 9] 국가재정법 개정 방안	18
[표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19

그림 차례

[그림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결손보전 혹은 채권 보증 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한도	9
[그림 2]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국가보증채무 비율	16

1. 문제 제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011년 286개가 있다.¹⁾ 공공기관 금융부채²⁾는 2005년 81.4조원에서 2009년 181.4조원으로 2.2배 증가하였으며,³⁾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부채는 2010년 말 125.5조원으로 부채비율이 559%에 달하고 있어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2010년 12월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발행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임대주택사업과 같은 정책사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에는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 손실을 전액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전 조항이 있다. 특히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라는 의무조항인 경우 사실상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가재정법은 국가보증채무에 관한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의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주는 공공기관(이하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으로 표기)의 경우 국가가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조영철 공공기관평가팀장(cfa20@nabo.go.kr, 788-4834)

김재환 사업평가관(telfeguy@assembly.go.kr, 788-4836)

- 1)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요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즉,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 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포함된다.
- 2) 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분양선수금, 임대보증금 등의 비금융부채와 금융비용을 수반하는 장·단기 차입금, 금융리스부채, 사채 등의 금융부채로 구성된다.
- 3) 국회예산정책처, 『금융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채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0.
- 4)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LH공사 유동성 확보 및 사업구조개선 추진」, 2011. 3. 16.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지만 국가보증채무와는 달리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부채보다 좀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정부가 그 규모와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에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의 현황과 이들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잔액 규모를 살펴보고,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2. 공공기관 손실보전 관련 법률 현황

2011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6개의 공공기관들 중 설립근거법에 공공기관이 공익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하는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경우를 찾아보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손실보전 조항이 규정된 이유는 원래 정부가 해야 할 공익사업을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을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공공기관 손실보전 조항의 구체적인 유형을 나누어 보면 “정부가 보전(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손실보전 조항과 “정부가 보전(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의적 손실보전 조항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준시장형 공기업⁵⁾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⁶⁾의 경우에는 각 기관 설립근거법에 임의적 손실보전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같은 정책금융 담당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의무적 손실보전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등의 정책금융사업에서 발생하는 예대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설립 당시부터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0년 12월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시장형공기업임에도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과 50% 이상 85%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6)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과 같이 정부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같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표 1] 공공기관별 손실보전 관련 법률조항

기 관		관련 법조문	손실보전 내용
준시장형 공기업	대한 석탄 공사	대한석탄 공사법 제12조	제12조(손익금의 처리)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u>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u>
	한국 광물 자원 공사	한국광물 자원공사법 제15조	15조(손익금의 처리)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u>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u>
	한국 토지 주택 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법 제11조	제11조(손익금의 처리)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u>정부가 보전한다.</u> 다만, 손실보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위탁 집행 형 준 정부 기관	대한무역 투자진흥 공사	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 법 제12조	12조(손익금의 처리)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u>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u>
	한국 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u>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u>
기금 관리 형 준 정	신용보증 기금	신용보증 기금법 제41조	제41조(결손보전)②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u>정부가 이를 보전한다.</u>
	기술보증 기금	기술신용 보증기금법 제45조	제45조(결손보전)②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u>정부가 이를 보전한다.</u>

기 관		관련 법조문	손실보전 내용
부 기 관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66조의2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 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u>정부가 이를 보전한다.</u>
	한국무역 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36조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 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 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u>정부가 보전한다.</u>
	한국주택 금융공사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제51조	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 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u>정부가 보전한다.</u>
기 타 공 공 기 관	한국정책 금융공사	한국정책 금융공사법 제31조	제3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 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u>정부 가 보상한다.</u>
	한국 수출입 은행	한국수출입 은행법 제37조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u>정부가 보전한다.</u>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 은행법 제43조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 고도 부족할 때에는 <u>정부가 보전한다.</u>
	한국산업 은행	한국산업 은행법 제44조	제44조(손실금의 보전)①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u>정부가 보상한다.</u>

자료: 해당 공공기관 설립근거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함.

3. 정부의 공공기관 손실보전제도 현황과 문제점

가. 정부 손실보전 조항과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위험가중치 변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AAA등급인데¹⁾ 같은 AAA등급의 공사채라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주는가 여부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위험계수가 달라진다.

신BIS제도에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²⁾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고,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³⁾에서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산정과 관련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한 내용은 [부표 1]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2]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해서 각 신용등급별 채권을 은행과 보험사가 보유하였을 때에 은행과 보험사가 자기자본비율과 RBC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위험가중치이다. 즉, 신용등급이 AAA인 채권의 경우 은행은 위험가중치를 20%로 부여하고, 보험사는 위험계수를 0.8%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도 은행은 20%의 위험가중치를, 보험사는 0.8%의 위험계수를 부여한다.

1)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임에도 예외적으로 AA+ 등급이다.

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은 단순자기자본비율(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을 산출하며 위험가중치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크게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은 0%, 국내 공공기관 10%, 은행 20%, 주택담보 대출 50%, 기타 100%로 구분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3) RBC제도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로 보험사가 가진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용리스크 등 각종 위험을 정밀히 측정해 이에 적합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기존의 EU식 지급여력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RBC제도는 2009년 4월에 도입되었지만, 2년간 현행 지급 여력비율과 RBC기준에 의한 지급여력비율 중 유리한 기준을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동 제도는 2011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표 2] 은행과 보험사의 규제자본 수준 비교

구 분	은 행	보 험 사
위험가중치 (위험계수)	○ AAA: 20% ○ AA+~AA-: 50% ○ A+~BBB-: 100% ○ BBB- 미만: 150% ○ 무등급: 100%	○ AAA: 0.8% ○ AA+~AA-: 2% ○ A+~BBB-: 4% ○ BBB- 미만: 6% ○ 무등급: 4%
산출식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100	RBC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 ×100
요구수준	BIS 자기자본비율 8%	RBC 지급여력비율 100%
요구자본수준 (무등급 경우)	무등급 100원에 대해 자기자 본 8원을 보유해야 함	무등급 100원에 대해 가용자 본 4원을 보유해야 함

주: 은행의 등급별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을 국내신용평가기관 등급으로 매핑한 결과임.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그러나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다르다. 즉, [표 3]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신용등급이 같은 AAA등급이더라도,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자기자본비율과 RBC를 계산할 때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하게 위험가중치가 0%로 적용된다.

[표 3]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위험가중치

정부의 결손보전이 제도화된 공공기관	표준신용등급	AAA~AA-
	위험가중치	0%
정부의 결손보전이 제도화되지 않은 공공기관	표준신용등급	AAA~AA-
	위험가중치	20%

주: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의 표준신용등급은 모두 AAA~AA-에 해당함.

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함.

이 때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임의적 손실보전 공공기관과 “정부가 보전한다”는 의무적 손실보전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정부의 손실보전이 임의적이든, 의무적이든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위험가중치를 국채나 국가보증채와 같은 0%로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금리도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무적 손실보전과 임의적 손실보전은 법률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의무적 손실보전 조항과 임의적 손실보전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위험가중치를 동일하게 0%로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채권 투자자들의 평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실제 시장 투자자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의적 손실보전 조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재정위험이 의무적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이나 국가보증채보다 높다고 볼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2010년 12월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도입되었는데, 도입 배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투자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발행이 제약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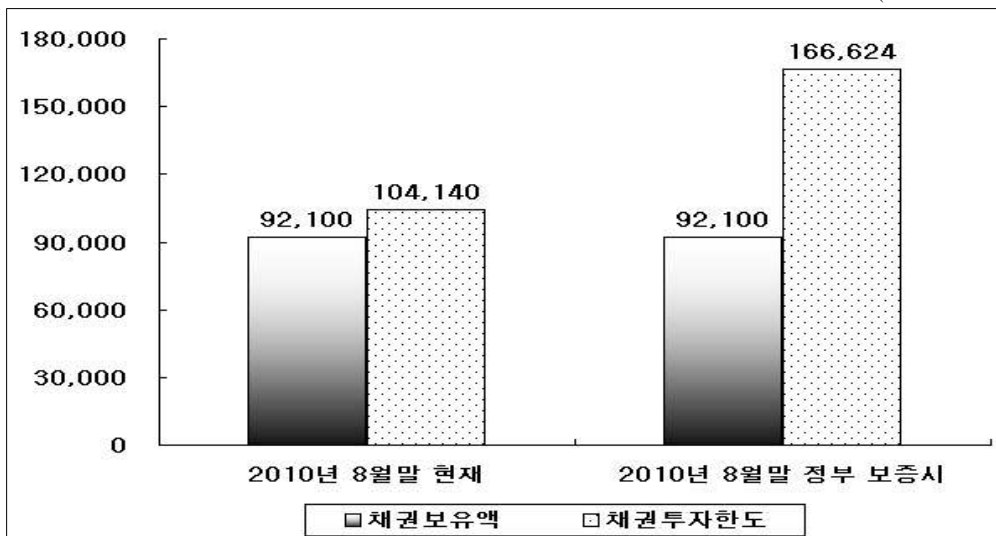
즉, 2010년 8월말 국민연금공단이 9.2조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채를 보유하여 주요 투자기관들 중 동 공사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09년까지는 채권 투자한도 대비 한국토지주택공사채 보유비율이 42.9%에 불과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추가 채권 투자여력이 충분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의 강화가 요구되자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1월 25일에 「국내채권 직접운용 특수채, 금융채 내부한도 관리기준」⁴⁾ 제정을 통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투자는 자기자본의 80%,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투자는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한도가 조정되었다. 결국 2010년 8월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손실보전 조항이

4)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및 시중 금융기관의 공사채 신용분석 등에 근거해 국민연금공단이 내부적으로 제정하였다.

없었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추가 채권 투자 여력은 [그림 1]과 같이 1.2조원에 그치게 되었다.

이 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결손을 보전해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채권을 보증해주면 국민연금공단의 동 공사채에 대한 투자한도는 16.7조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추가 투자여력은 7.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⁵⁾

[그림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결손보전 혹은 채권 보증 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한도
(단위: 억원)



자료: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함.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손실보전 조항만 도입되어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정부 결손보전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채권에 대한 투자기관들의 투자 한도는 늘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도입된 것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임의적 손실보전 조항만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손실보전

5)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2010, 287쪽.

임의조항 도입으로 규정 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금융투자기관의 투자한도는 늘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의 투자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채 투자를 늘릴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성을 지원 하는 확실한 방안은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 제3항⁶⁾을 활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주거나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었는데, 정부는 공사채 보증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도입하는 법개정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보증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은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나.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문제점

(1)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

[표 4]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발행채권 잔액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말 중소기업은행의 원화 채권발행 잔액 규모는 56.7조원, 외화 채권발행 잔액은 55억 달러에 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0년 말 원화 채권발행 잔액이 56.4조원, 외화 채권발행 잔액이 23억 달러였다. 한국산업은행의 2010년 말 원화 채권발행 잔액은 28조원, 외화 채권발행 잔액은 138억 달러였다.⁷⁾

외화 발행채권 잔액을 2010년 말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잔액 총규모를 추계할 경우 2010년 말 240.1조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2005년 90.9조원 대비 2.6배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손실보전 임의조항 공공기관인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장학재단 발행채권 잔액을 빼고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잔액만 계산하면 규모가 235.3조원에 달해 손실보전 공공기관 채권발행 잔액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공사채 발행)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7)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의 연도별 채권 발행액은 [부표 2]에 수록하였다.

[표 4]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의 연도별 채권발행 잔액

(단위: 억원, 백만불)

기 관	화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한석탄공사	KRW	1,100	1,700	2,000	1,400	4,000	4,000
한국광물 자원공사	KRW	-	-	-	-	-	2,000
	USD ¹⁾	-	-	-	-	195	400
한국장학재단 ³⁾	KRW					12,500	37,600
한국주택 금융공사	KRW	-	-	-	15,000	20,400	22,200
한국토지 주택공사	KRW	82,984	160,693	216,427	310,086	457,955	564,104 ²⁾
	USD ¹⁾	1,251	1,807	1,937	2,357	2,767	2,300
한국정책 금융공사 ⁴⁾	KRW	-	-	-	-	15,000	195,000
	USD	-	-	-	-	-	1,150
한국 수출입은행	KRW	4,953	6,652	15,002	34,443	69,773	62,510
	USD ¹⁾	8,112	10,096	14,366	15,144	19,493	22,794
중소기업은행	KRW	148,365	308,156	409,028	505,969	535,230	567,262
	USD ¹⁾	1,619	2,044	3,426	4,731	4,954	5,538
중소기업 진흥공단 ⁵⁾	KRW	99,360	108,569	113,499	118,489	150,759	150,789
한국산업은행	KRW	307,407	354,193	416,041	495,384	350,609	280,032
	USD ¹⁾	12,608	12,730	15,793	14,896	14,373	13,838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 합계 ⁶⁾		908,612	1,239,012	1,570,198	1,896,975	2,084,602	2,401,381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합계 ⁷⁾		907,512	1,237,312	1,568,198	1,895,575	2,065,916	2,353,297

주: 1.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발행당시의 환율에 따른 달러 환산 금액임.

2. ABS 발행액 2조 1,000억원 포함.

3. 한국장학재단의 3조 7,600억원 중 2010년 발행채권 2조 5,100억원은 국가보증채임.

4.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에서 분리되어 2009년 10월 28일 설립됨.

5.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년 말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 공사는 2010년 말에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음.

6.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 합계는 채권발행 잔액의 연도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각 기관 발행 외화표시 채권을 단순히 2010.12.31 기준환율 1,121원으로 환산한 한 원화표시 채권 과 합산한 금액이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보증을 받은 2010년 발행채권 2조 5,100억원을 제외하면 2010년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잔액 합계는 237조 6,281억원임.

7.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합계는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 합계에서 손실보전 임의 조항 공공기관인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 잔액을 뺀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리함.

[표 5]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들의 부채 총규모는 2009년 말 599조원으로 2005년 말 대비 1.9배 증가하였다.⁸⁾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경우 2009년 말 206.6조원으로 2005년 말 대비 2.3배 증가하였다. 즉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 증가율이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공공기관 부채 대비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비율은 2005년 28.4%에서 2009년 34.5%로 증가했다.

[표 5] 공공기관 부채 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가율
공기업(시장형)	35.5	38.2	39.8	56.0	62.7	176.7
공기업(준시장형)	62.4	79.4	97.3	119.8	149.2	239.0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3.4	3.1	4.3	6.7	8.6	253.8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22.8	25.4	27.8	30.2	35.0	153.4
기타공공기관	195.1	222.5	263.9	340.4	343.5	176.1
공공기관 부채 합계(A)	319.2	368.7	433.2	553.1	599.0	187.7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B)	90.8	123.7	156.8	189.6	206.6	227.8
(B/A)	28.4	33.6	36.2	34.3	34.5	

주: 증가율은 2005년 대비 2009년 수치임.

자료: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함.

국가채무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5년 말 247.9조원에서 2010년 400.4조원으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동 기간 동안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

8) 2009년 말 공공기관 부채 599조원은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 총액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말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347.6조원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은 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제외한 값이다. 기획재정부가 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제외한 이유는 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할 경우 금융 공공기관의 예금수신액이 공공기관 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에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공공기관 부채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부채에 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관 발행채권이 2.6배 증가했으므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이 국가채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비율은 2005년 36.6%에서 2010년 58.8%로 증가했다.

[표 6] 국가채무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 비율

(단위: 조원, 배수)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 잔액(A)	90.8	123.7	156.8	189.6	206.6	235.3	258.9
국가채무(B)	247.9	282.7	299.2	309.0	359.6	400.4	161.5
비율(A/B)	36.6	43.7	52.4	61.3	57.3	58.8	

주: 1. 증가율은 2005년 대비 2010년 수치임.

2. 2010년 국가채무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와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함.

공공기관 금융부채와 국가채무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효과를 갖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이 2009년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34.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대비 비율도 2010년 58.8%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0년 12월 동 공사법 개정으로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는데, [표 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발행 계획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 발행 규모가 2011년 17조원, 2012년 17.3조원, 2013년 18.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2011년 4월부터 보험업계에 RBC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위험계수가 낮은 공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손실보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⁹⁾

[표 7] 한국토지주택공사 채권발행 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출 계	39.4	43.1	45.9	49.4	50.9	52.0	56.7	55.5	58.6
사업비	26.0	27.4	30.0	30.0	33.1	35.0	35.0	35.0	35.0
원리금상환	8.0	11.7	14.3	17.8	16.1	15.1	19.4	17.9	20.9
수입 계	39.4	44.1	45.9	49.4	50.9	52.0	56.7	55.5	58.6
대금회수	13.9	17.4	19.3	21.3	29.3	33.1	37.0	40.5	42.3
채권발행	15.1	17.0	17.3	18.5	13.1	10.4	11.2	6.5	7.6
기금	7.0	6.9	8.1	8.6	7.4	7.0	6.7	7.1	7.1

주: 2010년은 실적치이며, 2011년 이후는 재무진단용역 결과('10.11, 안진회계법인) 추계치 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관리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일부개정(2010.5.17)된 국가재정법은 재정 관련 자료의 하나로서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 또한 국가재정법 제92조 2항¹¹⁾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4조¹²⁾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보증채

9) 한국투자증권, “제한적인 변화 가져올 RBC 제도 도입”, 2010.1.6.

10)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11)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⑦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0.7.9>

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개정(2010.5.17)된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가 향후 재정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국회가 파악·분석하거나 예산안 등 심의와 관련하여 충분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증채무 규모와 2011~2014 회계연도의 국가보증채무 전망이 포함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이 작성되어 2010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표 8]에서 보듯이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2010년 현재 34.8조원으로서 GDP 대비 3.0%에 달했다.

[표 8] 최근 5년간 국가보증채무 잔액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국가보증채무 (GDP 대비 %)	55.0 (6.4)	36.5 (4.0)	33.1 (3.4)	28.1 (2.7)	29.8 (2.8)	34.8 (3.0)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50.5	34.0	30.6	28.0	27.3	26.7
- 구조조정기금채권	-	-	-	-	0.8	4.0
- 한국장학재단채권	-	-	-	-	-	2.5
-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	-	-	-	1.5 ²⁾	1.5 ³⁾
- 수리자금	0.2	0.2	0.2	0.15	0.1	0.1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4.0	2.3	2.3	-	-	-
- 일본수출입은행 차관	0.3	0.1	0.03	-	-	-

주: 1. 한국장학재단채권의 경우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이지만, 채권발행 시 국가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대상이며, 2010년 보증한도 9.0조원, 2010년 발행실적 2.5조원임.

2. 12.8억불, 2009년말 매매기준율 1,167.6원 적용함.

3. 12.8억불, 2010년 예산편성 기준 환율 1,150원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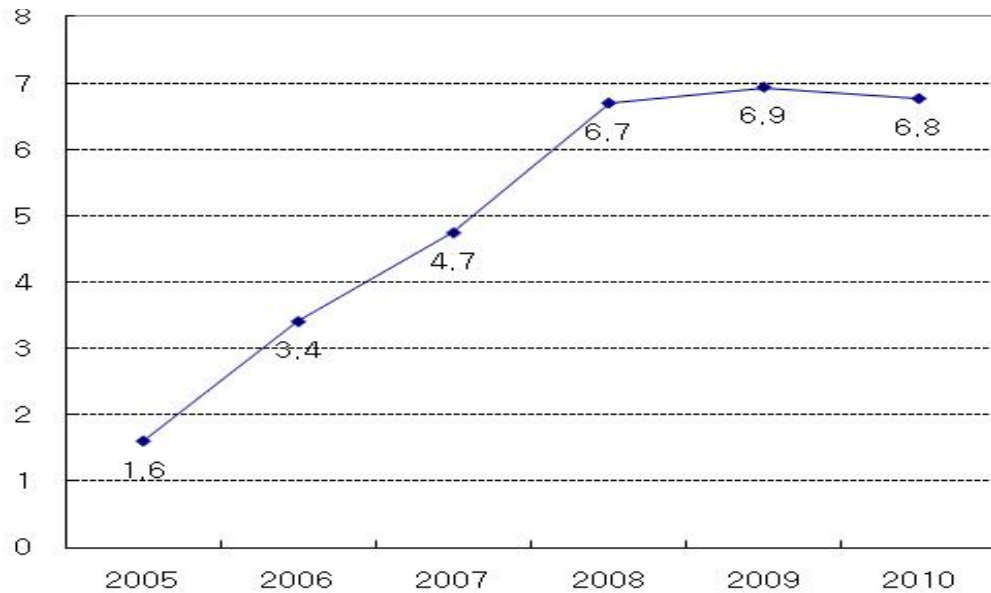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대한민국재정』, 2011, 기획재정부 『2010~2014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0.

국가보증채무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의 비율은 [그림 2]에서 보듯이 2005년 1.6배, 2008년 6.7배로 급속히 증가해 2010년 6.8배에 달하고 있다.¹³⁾

13) 국가보증채무 2010년 말 자료는 『2010~2014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2010년 8월말 자료를 사용했다.

[그림 2]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국가보증채무 비율

(단위 : 배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대한민국재정』, 2011, 기획재정부 『2010~2014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 2010.

이와 같이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나 구조조정기금채권, 한국장학재단채권 등 국가보증채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정부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국가보증채와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 규모가 국가보증채의 6.8배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위험을 관리하는데서 차지하는 의미는 국가보증채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내역이나 규모에 대해서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정투명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공공기관 손실보전 조항 관련 법률 개선방안

앞서 검토하였듯이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위험가중치와 위험계수가 0%가 적용되는데다가, 201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RBC 제도로 인해 안전자산인 공사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 그 발행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그동안 손실보전에 대한 조항이 없다가 2009년 12월 30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2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는데,¹⁴⁾ 이후 중소기업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BIS 위험가중치가 0%로 낮아지면서, 2010년 11월말까지 채권발행금리가 0.08%p 낮아지고 52.3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는 영향을 미쳤고 향후 점진적으로 채권발행금리가 0.2%p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⁵⁾

최근 공기업 부채가 2005년 98조원에서 2009년 212조원으로 급증하여¹⁶⁾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국가채무나 일반적인 공기업 부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국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증채의 6.8배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채 수요증가로 인해 발행량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¹⁷⁾를 생각해볼 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서도 국가보증채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4) 부칙에 의해 법시행일은 2010년 3월 30일이었다.

15) 변동금리부 채권은 금리절감효과 산정 시 제외되었다.

16) 국회예산정책처,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2010.

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9]와 같이 국가재정법 제9조의2의 재정관련 자료의 제출에 손실보전 의무 조항 공공기관의 채무 현황이나 추후 관리계획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9] 국가재정법 개정 방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현행 본문과 같음)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신 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1항 1호 내지 3호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설립근거법에 정부가 손실보전의 의무를 지는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관리계획

※ 설립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임.

또 다른 개정 방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를 개정하는 방안이다.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혹은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인 경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제2호에 의해 동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 10]과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를 개정하여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현재의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제2호에 의해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표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거나 <u>설립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있는 공공기관</u>

〈부 록〉

[부표 1]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위험가중치 관련 세칙 내용

BIS 위험가중치	RBC 위험계수	대 상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아래 「중앙은행 및 중앙정부 익스포져」에서 정하는 것	0%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은행 익스포져」에서 정하는 것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정부에 대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계수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4조1항 1호 내지 3호 적용 기관 -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인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 등급에 따라 아래 「은행 익스포져」에서 정하는 것과 50% 중 높은 것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정부에 대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계수와 2% 중 높은 것	-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

주: 1.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규정에 있는 매핑기준에 따라 결정함.

2. 익스포저란 위험가중자산 또는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가중치 산정방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제2장 제3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부록>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수록하였음.

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함.

[부표 2]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각 연도별 채권 발행액

(단위: 억원, 백만불)

기 관	화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한석탄공사	KRW	1,100	600	300	-	3,000	500
한국광물 자원공사	KRW	-	-	-	-	-	2,000
	USD ¹⁾	-	-	-	-	195	355
한국주택 금융공사	KRW	-	-	-	15,000	13,400	11,400
한국장학재단	KRW	-	-	-	-	12,500	25,100
한국토지 주택공사	KRW	15,280	85,219	72,719	103,441	175,300	138,181 ²⁾
	USD ¹⁾	467	500	130	420	750	130
한국정책 금융공사	KRW	설 립 전				15,000	184,000
	USD					-	1,150
한국 수출입은행	KRW	5,000	6,800	14,500	36,900	81,500	89,200
	USD ¹⁾	2,228	3,441	7,403	4,923	8,167	7,617
중소기업은행	KRW	123,531	298,077	320,404	454,121	455,650	538,467
	USD ¹⁾	552	668	1,378	984	1,985	1,548
중소기업 진흥공단	KRW	29,800	28,629	24,200	24,980	54,400	23,900
한국산업은행	KRW	217,500	247,600	271,631	265,190	233,333	80,008
	USD ¹⁾	3,103	3,284	4,472	3,134	3,785	3,293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 합계 ³⁾		463,394	755,405	853,777	1,005,689	1,210,910	1,250,738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합계 ⁴⁾		462,294	754,805	853,477	1,005,689	1,193,224	1,219,158

주: 1.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발행당시의 환율에 따른 달러 환산 금액임.

2. ABS 발행액 2조 1,000억원 포함.

3.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 합계는 채권발행액의 연도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각 기관 발행 외화표시 채권을 단순히 2010.12.31 기준환율 1,121원으로 환산한 한 원화표시 채권과 합산한 금액임.

4.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합계는 손실보전 조항 공공기관 합계에서 손실보전 임의조항 공공기관인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액을 뺀 수치임.

자료: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함.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재무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표 3]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당좌자산	57,906	78,249	61,474	78,880	118,848	154,154
재고자산	202,964	227,743	371,331	486,358	572,118	668,716
유형자산	104,035	139,327	179,275	243,659	313,586	427,118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115	143	190	17,592	20,354	22,402
자산총계	402,399	481,496	655,980	843,828	1,052,592	1,300,710
금융부채	170,311	204,094	314,430	408,976	550,953	749,811
부채총계	281,003	343,831	504,301	669,089	857,525	1,092,428
자본총계	121,396	137,665	151,679	174,739	195,067	208,282
매출액	73,279	81,653	105,650	131,804	168,782	184,553
영업이익	13,961	10,835	17,068	24,232	27,557	12,973
당기순이익	7,214	8,526	7,789	15,293	14,287	6,801

자료: 한국토지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편집.

주: 1. 2008년 이전분은 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단순 합계임.

2. 2009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해산법인과 신설법인의 합계액임.

3. 2009년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은 신설법인의 2009.12.31 잔액임.

[부표 4]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익성관련 주요 지표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EBITDA / 매출액	20.62	15.10	17.83	19.98	17.92	8.94
매출액순이익률	9.84	10.44	7.37	11.60	8.46	3.69
총자산순이익률(ROI)	1.79	1.77	1.19	1.81	1.36	0.52
자기자본순이익률(ROE)	5.94	6.19	5.14	8.75	7.32	3.27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편집.

[부표 5]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관련 주요 지표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부채비율	231.48	249.76	332.48	382.91	439.61	524.50
차입금의존도	42.32	42.39	47.93	48.47	52.34	57.65
이자보상배율(배)	4.09	2.94	3.62	2.91	3.14	1.25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편집.

[부표 6] 한국토지주택공사 현금흐름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영업활동 현금흐름	△7,947,208	401,857	△9,033,189	△3,883,243	△3,551,049	△5,288,158
투자활동 현금흐름	△1,419,580	△3,509,737	△5,560,751	△6,258,757	△8,859,570	△13,325,406
재무활동 현금흐름	7,893,546	4,784,006	12,531,399	10,160,895	14,040,931	20,894,389
현금 순증감	△1,473,241	1,676,127	△2,062,542	18,894	1,630,312	2,280,825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편집.

[부표 7]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자체수입 등	합 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 및 독점 수입		
2005	-	848,786	100,000	-	3,459,661	15,414,648	19,823,095
2006	-	807,622	144,100	-	4,239,041	25,767,002	30,957,765
2007	-	967,822	256,828	-	4,234,418	27,130,506	32,589,574
2008	-	1,049,240	215,849	-	2,869,747	31,260,228	35,395,064
2009	-	1,028,279	231,260	-	6,350,513	43,126,659	50,736,711
2010	-	1,551,961	72,341	-	6,694,981	49,477,036	57,796,319

[부표 8]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기타	합 계
2005	11,977,047	315,273	220,235	2,669,852	4,640,688	19,823,095
2006	25,273,559	367,904	224,667	468,685	4,622,950	30,957,765
2007	24,455,861	398,104	301,253	484,404	6,949,952	32,589,574
2008	24,424,097	444,593	339,842	2,105,418	8,081,114	35,395,064
2009	33,076,357	396,996	289,390	4,385,678	12,588,290	50,736,711
2010	40,653,912	294,651	297,821	4,125,978	12,423,957	57,796,319

□ 기술보증기금

[부표 9] 기술보증기금 수익구조 및 수익성 비율

(단위: 백만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익구조						
영업수익	558,290	297,756	250,567	336,161	343,940	404,998
(이자수익)	17,895	3,914	16,648	33,551	62,900	79,076
(기타수익)	540,395	293,842	233,919	302,610	281,040	325,922
영업비용	1,702,022	1,242,106	702,780	645,477	655,351	840,439
(기타비용)	1,702,022	1,242,106	702,780	645,476	655,351	840,439
영업이익	△1,143,732	△944,350	△452,213	△309,316	△311,411	△435,441
당기순이익	△1,143,732	△944,350	△452,213	△309,316	△311,411	△435,441
수익성분석						
순이자마진을	100%	100%	100%	100%	100%	100%
총자산 순이익률	△96.2%	△85.7%	△31.7%	△18.4%	△15.2%	△14.8%
자기자본 순이익률	△17.1%	△12.3%	△5.4%	△3.4%	△3.2%	△3.9%

[부표 10] 기술보증기금 자본구조 분석 및 안정성 비율

(단위: 백만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본구조						
총자산	1,188,882	1,101,670	1,426,509	1,680,142	2,051,855	2,945,787
자기자본	6,695,552	7,663,397	8,443,816	9,044,984	9,640,891	11,042,675
자본금	777,307	798,054	1,152,576	1,446,157	1,729,684	2,695,374
안정성 비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64.5%	72.4%	80.8%	86.1%	84.3%	91.5%

[부표 11] 기술보증기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자체수입 등	합 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 및 독점 수입		
2005	350,000	-	-	609702	-	572,369	1,613,116
2006	600,000	-	-	200821	-	614,635	1,464,250
2007	200,000	-	-	400633	-	587,020	1,652,271
2008	157,500	-	-	437873	-	661,809	1,739,177
2009	720,000	-	-	470217	-	862,794	3,266,766
2010	-	-	-	466400	-	624,670	2,082,103

[부표 12] 기술보증기금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기타	지출합계
2005	1,421,765	91,283	48,799	-	51,269	1,613,116
2006	830,974	75,247	37,604	-	520,425	1,464,250
2007	778,127	80,802	42,173	-	751,169	1,652,271
2008	745,591	86,873	48,530	-	858,183	1,739,177
2009	965,359	87,053	39,038	-	2,175,316	3,266,766
2010	1,413,424	90,764	52,588	-	525,327	2,082,103

□ 한국산업은행

[부표 13] 한국산업은행 수익구조 및 수익성 비율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익구조						
영업수익	133,811	107,304	113,156	125,787	441,310	276,823
(이자수익)	(28,471)	(30,292)	(36,505)	(44,790)	(58,009)	(53,745)
(기타 영업수익)	(105,340)	(77,012)	(76,651)	(80,997)	(383,301)	(223,078)
영업비용	131,202	105,037	111,214	114,370	432,409	276,765
(이자비용)	(25,289)	(25,982)	(32,943)	(42,384)	(49,971)	(44,769)
(기타 영업비용)	(105,913)	(79,055)	(78,271)	(71,986)	(382,438)	(231,996)
영업이익	2,609	2,267	1,942	11,417	8,901	58
당기순이익	9,975	24,217	21,008	20,476	3,503	7,611
수익성분석						
순이자마진을	0.47	0.61	0.44	0.20	0.74	0.71
총자산 순이익률	1.11	2.58	2.08	1.75	0.24	0.49
자기자본 순이익률	11.02	19.29	13.37	11.31	2.05	4.44

[부표 14] 한국산업은행 자본구조 분석 및 안정성 비율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본구조						
총자산	922,272	965,107	1,045,233	1,226,159	1,576,127	1,223,334
자기자본	102,630	147,450	165,062	185,867	157,153	151,107
자본금	82,419	82,419	82,419	82,419	87,419	92,419
안정성 비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8.08	17.98	17.15	16.50	13.61	16.37
고정이하 여신비율	1.59	1.01	0.84	0.98	1.19	2.24

[부표 15] 한국산업은행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11,776	26,333	△3,052	△110,218	△214,008	△107
투자활동 순현금흐름	△10,891	△81,414	△51,729	△14,480	△15,862	14,537
재무활동 순현금흐름	△1,229	55,216	54,435	124,774	229,845	△8,567
분할로 인한 현금흐름	-	-	-	-	-	△5,777

[부표 16] 한국산업은행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자체수입 등	합 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 및 독점 수입		
2005	-	-	-	-	-	13,094,405	13,094,405
2006	-	-	-	-	-	13,348,241	13,348,241
2007	-	-	-	-	-	14,058,850	14,058,850
2008	-	500,000	-	-	-	44,507,438	45,007,438
2009	-	900,000	-	-	-	28,790,832	29,690,832
2010	-	-	-	-	-	24,871,639	24,871,639

[부표 17] 한국산업은행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기타	합 계
2005	10,146,930	181,671	175,118	-	2,590,686	13,094,405
2006	10,738,574	196,630	186,209	-	2,226,828	13,348,241
2007	11,028,451	207,996	200,512	-	2,621,891	14,058,850
2008	42,808,700	213,088	219,120	-	1,766,530	45,007,438
2009	27,261,019	201,950	213,532	-	2,014,331	29,690,832
2010	23,558,142	223,414	269,837	-	820,246	24,871,639

[부표 18] 한국산업은행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자산	96,510,693	104,523,312	122,615,945	157,612,702	122,333,446
부채	81,765,704	88,017,145	104,029,261	141,897,367	107,222,739
자본	14,744,989	16,506,167	18,586,684	15,715,335	15,110,707

[부표 19] 한국산업은행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10,730,447	11,806,445	12,578,671	44,130,991	27,682,326
영업이익	226,729	575,897	1,141,711	890,083	5,825
당기순이익	2,421,721	2,100,824	2,047,604	350,329	761,112

□ 한국수출입은행

[부표 20] 한국수출입은행 수익구조 및 수익성 비율

(단위: 백만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익구조						
영업수익	813,012	933,648	1,273,814	2,259,494	5,118,029	3,949,277
(이자수익)	(411,147)	(492,749)	(741,592)	(1,037,036)	(1,407,419)	(1,435,855)
(기타수익)	(401,865)	(440,899)	(532,222)	(1,222,458)	(3,710,610)	(2,513,422)
영업비용	729,565	916,554	1,043,780	2,013,689	4,924,077	3,922,616
(이자비용)	(319,279)	(392,329)	(488,634)	(816,897)	(1,106,851)	(1,223,943)
(기타비용)	(410,286)	(524,225)	(555,146)	(1,196,792)	(3,817,226)	(2,698,673)
영업이익	83,447	17,094	230,034	245,805	193,952	26,661
당기순이익	77,476	224,491	168,316	184,281	93,974	25,829
수익성분석						
순이자 마진율	0.89%	0.88%	1.93%	1.26%	1.09%	0.81%
총자산 순이익률	0.64%	1.48%	0.96%	0.78%	0.26%	0.06%
자기자본 순이익률	2.19%	4.60%	3.54%	3.73%	1.85%	0.40%

[부표 21]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구조 분석 및 안정성 비율

(단위: 백만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본구조						
총자산	12,170,623	15,155,765	17,448,473	23,639,409	35,981,937	42,027,817
자기자본	3,544,080	4,878,388	4,759,935	4,935,540	5,090,354	6,463,355
자본금	2,775,755	3,295,755	3,305,755	3,308,755	3,958,755	5,008,755
안정성 비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2.86%	13.90%	11.80%	11.00%	8.70%	11.25%
고정이하 여신비율	1.14%	0.22%	0.13%	0.14%	0.25%	0.53%

[부표 22] 한국수출입은행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266,267	157,851	△2,450,127	△5,561,173	△9,108,821	△6,966,289
투자활동 순현금흐름	△443,582	△1,560,975	△6,089	△5,412	782	△1,999
재무활동 순현금흐름	138,491	1,377,667	2,544,203	5,541,339	9,232,930	7,610,377
현금 순증감	△38,824	△25,457	87,987	△25,246	124,891	642,089

[부표 23] 한국수출입은행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자체수입 등	합 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 및 독점 수입		
2005	-	20,000	-	-	-	1,223,964	1,243,964
2006	-	10,000	-	-	-	1,279,106	1,289,106
2007	-	3,000	-	-	-	2,264,355	2,267,355
2008	-	650,000	-	-	-	5,122,275	5,772,275
2009	-	1,050,000	-	-	-	3,960,154	5,010,154
2010	-	150,000	-	-	-	1,797,800	1,947,800

[부표 24] 한국수출입은행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기타	합 계
2005	836,748	53,154	26,652	-	327,410	1,243,964
2006	957,731	57,326	28,723	-	245,326	1,289,106
2007	1,923,588	60,266	29,835	-	253,666	2,267,355
2008	4,828,422	63,049	32,606	-	848,198	5,772,275
2009	3,828,703	59,897	34,016	-	1,087,538	5,010,154
2010	1,653,988	59,814	44,898	-	189,100	1,947,800

[부표 25] 한국수출입은행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자산	15,155,765	17,448,473	23,639,409	35,981,937	42,027,817
부채	10,277,377	12,688,539	18,703,870	30,891,583	35,564,462
자본	4,878,388	4,759,934	4,935,539	5,090,354	6,463,355

[부표 26] 한국수출입은행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933,648	1,273,814	2,259,494	5,118,029	3,949,277
영업이익	17,094	230,034	245,805	193,952	26,661
당기순이익	224,491	168,316	184,281	93,974	25,829

□ 한국정책금융공사

[부표 27] 한국정책금융공사 자본구조 분석 및 안정성 비율

(단위: 백만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본구조						
총자산	-	-	-	-	-	40,508,708
자기자본	-	-	-	-	-	18,120,469
자본금	-	-	-	-	-	15,000,000
안정성 비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	-	-	-	15.45%
고정이하 여신비율	-	-	-	-	-	0%

[부표 28] 한국정책금융공사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	-	-	-	-	600,607
투자활동 순현금흐름	-	-	-	-	-	1,110
재무활동 순현금흐름	-	-	-	-	-	1,499,850
현금 순증감	-	-	-	-	-	898,133

[부표 29]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자체수입 등	합 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 및 독점 수입		
2005	-	-	-	-	-	-	-
2006	-	-	-	-	-	-	-
2007	-	-	-	-	-	-	-
2008	-	-	-	-	-	-	-
2009	-	15,000,000	-	-	-	166,251	15,166,251
2010	-	-	-	-	-	1,370,600	1,370,600

[부표 30] 한국정책금융공사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기타	합 계
2005	-	-	-	-	-	-
2006	-	-	-	-	-	-
2007	-	-	-	-	-	-
2008	-	-	-	-	-	-
2009	190,430	1,025	4,329	-	14,970,467	15,166,251
2010	1,240,600	11,427	31,821	-	86,752	1,370,600

[부표 31] 한국정책금융공사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자산	-	-	-	-	40,508,709
부채	-	-	-	-	22,388,239
자본	-	-	-	-	18,120,469

□ 중소기업은행

[부표 32] 중소기업은행 자본구조 분석 및 안정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본구조(은행계정)						
총자산	74,494,554	85,519,361	103,435,802	119,304,171	141,780,794	150,916,964
자기자본	3,904,501	4,757,550	5,897,353	6,684,256	7,522,584	9,215,607
자본금	2,291,385	2,291,385	2,291,385	2,291,385	2,703,088	3,207,944
안정성 비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1.17	11.11	11.70	11.11	11.54	11.91
고정이하 여신비율	2.19	1.17	0.69	0.72	1.43	1.20

[부표 33] 중소기업은행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자체수입 등	합 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 및 독점 수입		
2005	-	-	-	-	-	6,664,444	6,664,444
2006	-	-	-	-	-	8,231,116	8,231,116
2007	-	-	-	-	-	10,454,832	10,454,832
2008	-	500,000	-	-	-	22,811,240	23,311,240
2009	-	800,000	-	-	-	20,863,981	21,663,981
2010	-	30,000	-	-	-	22,390,000	22,420,000

[부표 34] 중소기업은행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자산	85,519,361	103,435,802	119,304,171	141,780,794	150,916,964
부채	80,761,811	97,538,449	112,619,915	134,258,210	141,701,357
자본	4,757,550	5,897,353	6,684,256	7,522,584	9,215,607

[부표 35] 중소기업은행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6,501,815	8,163,545	10,353,493	22,749,263	20,763,777
영업이익	1,100,964	1,414,244	1,555,512	1,092,961	841,607
당기순이익	778,494	1,053,323	1,167,918	767,023	710,476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표 36] 한국무역보험공사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동자산	409,271	346,902	240,313	282,429	1,537,079	1,390,879
비유동자산	2,074,018	2,142,476	2,287,990	2,303,008	2,415,417	1,621,388
자산 총계	2,483,289	2,489,378	2,528,303	2,585,437	3,952,496	3,012,267
유동부채	25,635	14,721	24,531	14,547	21,412	11,803
비유동부채	822,929	681,942	672,797	588,550	2,402,079	1,271,775
부채 총계	848,564	696,663	697,328	603,097	2,423,491	1,283,578
자본금	1,630,135	1,680,135	1,730,135	1,755,135	1,780,135	2,039,825
이익잉여금	△14,952	55,393	67,404	180,761	△250,310	△312,689
자본총계	1,634,725	1,792,715	1,830,975	1,982,340	1,529,005	1,728,689
매출액	62,891,189	73,157,953	82,668,535	91,627,480	129,801,667	164,960,281
영업이익	38,568	52,492	29,421	110,658	△439,181	△317,348
영업외수익	6,428	22,553	4,464	4,609	23,759	4,677
영업외비용	8,068	4,705	86	156	40,989	73
세전이익	36,928	70,340	33,799	115,111	△456,411	△312,744
당기순이익	36,928	70,345	12,011	113,357	△431,071	△312,689

주: 매출액은 수출보험 지원실적으로 대체하여 기입

[부표 37]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자체수입 등	합 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 및 독점 수입		
2005	50,000	-	-	-	-	807,859	1,907,342
2006	50,000	-	-	-	-	742,887	1,677,002
2007	25,000	-	-	-	-	644,781	1,794,668
2008	25,000	-	-	-	-	1,576,565	4,223,583
2009	510,000	-	-	-	-	2,297,077	4,411,314
2010	100,000	-	-	-	-	1,226,881	2,366,381

[부표 38] 한국무역보험공사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자산	2,489,378	2,528,303	2,585,437	3,952,496	-
부채	696,663	697,328	603,097	2,423,491	-
자본	1,792,715	1,830,975	1,982,340	1,529,005	-

주: 2009년은 국가회계기준에 의해 결산함으로써 작성 생략

[부표 39] 한국무역보험공사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당기 순이익	70,345	12,011	113,357	△431,071	-

주: 2009년은 국가회계기준에 의해 결산함으로써 작성 생략

□ 중소기업진흥공단

[부표 40]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요사업 현황(매출액 기준)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창업지원 사업수익	566,810	589,133	706,781	779,740	723,110	821,025
분양사업수익	13,698	1,626	604	2,641	1,175	1,714
연수사업수익	8,010	9,299	9,776	11,041	10,581	8,009
임대사업수익	2,303	2,317	1,575	1,541	1,330	1,908
정보제공 사업수익	705	756	696	672	747	1,249
기타	85,353	6,230	994	362	350	454
계	676,879	609,361	720,426	795,997	737,293	834,359

[부표 41]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부채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동성장기부채	751,649	679,936	533,677	352,597	209,977	177,737
장기차입금	2,074,139	1,388,253	839,870	488,566	317,626	264,850
사 채	8,409,578	9,893,368	10,801,087	11,227,433	11,905,619	15,165,493
합 계	11,235,366	11,961,557	12,174,634	12,068,596	12,433,222	15,608,080

[부표 42]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동자산	2,676,954	2,444,655	2,652,585	2,360,801	2,492,601	2,910,265
비유동자산	10,685,544	11,495,860	11,514,448	11,760,555	11,924,715	14,836,197
자산 총계	13,362,498	13,940,515	14,167,033	14,121,356	14,417,316	17,746,462
유동부채	2,452,973	2,705,058	2,592,243	2,546,087	2,525,504	2,847,852
비유동부채	9,057,747	9,404,429	9,779,907	9,764,207	10,127,749	12,931,926
부채 총계	11,510,720	12,109,487	12,372,150	12,310,294	12,653,253	15,779,778
자본금	1,934,963	1,996,332	2,032,484	2,045,767	2,057,117	2,266,259
이익잉여금	△83,185	△165,304	△237,601	△234,705	△293,054	△299,575
자본총계	1,851,778	1,831,028	1,794,883	1,811,062	1,764,063	1,966,684
매출액	676,879	609,361	720,426	795,997	737,293	834,359
매출총이익	△114,533	△80,973	△87,692	△6,254	△82,788	△126,316
영업이익	△137,788	△107,496	△115,416	△35,867	△120,254	△166,322
영업외수익	104,671	101,226	96,797	145,139	374,069	137,445
영업외비용	42,558	77,840	50,674	106,843	363,230	107,122
세전이익	△75,675	△84,110	△69,293	2,429	△109,415	△135,999
당기순이익	△62,182	△84,110	△69,293	2,429	△109,415	△135,999

[부표 43]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자체수입 등	합 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 및 독점 수입		
2005	84,446	-	23,954	-	-	3,320,217	6,661,234
2006	192,338	-	22,203	-	-	3,491,496	6,655,620
2007	210,711	-	20,595	-	-	3,747,356	6,463,331
2008	124,235	-	14,404	-	-	3,606,768	6,330,045
2009	423,708	-	16,425	-	-	3,540,822	9,504,869
2010	252,345	-	15,926	-	-	4,084,650	6,878,370

[부표 44]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기타	지출합계
2005	3,709,267	42,430	14,652	143,825	558,547	6,661,234
2006	3,248,360	44,306	16,948	105,684	620,124	6,655,620
2007	3,257,989	45,802	14,886	34,081	649,817	6,463,331
2008	3,259,702	46,901	16,904	28,609	618,402	6,330,045
2009	6,219,345	49,225	21,395	7,757	751,352	9,504,869
2010	3,292,350	50,992	19,917	-	948,350	6,878,370

□ 주택금융공사

[부표 45]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본구조 분석 및 안정성 비율

(단위: 백만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본구조						
총자산	401,956	711,782	444,483	1,284,557	2,569,879	3,443,840
자기자본	394,747	398,989	403,478	460,313	451,821	858,849
자본금	376,600	376,600	376,600	426,600	676,600	1,076,600
안정성 비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29.2	16.3	15.3	14.0	12.6	16.2
고정이하 여신비율	-	-	-	-	0.04	0.15

[부표 46]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자체수입 등	합 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 및 독점 수입		
2005	-	-	-	-	250	800,817	801,067
2006	-	-	-	-	600	739,175	739,775
2007	-	50,000	-	-	600	1,442,363	1,492,963
2008	-	250,000	-	-	600	3,275,821	3,526,421
2009	-	400,000	-	-	200	7,686,507	8,086,707
2010	-	-	-	-	-	11,072,907	11,072,907

[부표 47]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기타	합 계
2005	72,329	9,174	12,587	260,031	446,946	801,067
2006	317,199	11,930	13,667	377,891	19,088	739,775
2007	223,806	12,955	12,729	427,539	815,934	1,492,963
2008	1,132,343	14,154	12,955	329,907	2,037,062	3,526,421
2009	7,466,392	12,239	13,869	553,307	40,900	8,086,707
2010	8,751,472	12,897	43,538	763,200	1,501,800	11,072,907

[부표 48] 한국주택금융공사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121,398	122,914	178,104	362,577	436,716
영업이익	4,405	7,503	13,720	△255,842	18,669
당기순이익	3,150	5,481	9,960	△259,807	35,746

□ 신용보증기금

[부표 49] 신용보증기금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동자산	2,930,902	2,846,399	3,003,554	3,088,984	2,701,915	3,856,128
비유동자산	1,455,024	1,125,920	1,371,708	1,128,940	1,817,382	3,390,153
자산 총계	4,385,926	3,972,319	4,375,262	4,217,924	4,519,297	7,246,281
유동부채	253,396	224,411	242,154	257,703	287,453	311,276
비유동부채	929,415	581,929	413,506	353,566	510,587	583,409
부채 총계	1,182,811	806,340	655,660	611,269	798,040	894,685
이익잉여금	△10,633,631	△11,282,728	△11,564,252	△12,001,009	△12,714,171	△13,464,074
자본총계	3,203,115	3,165,979	3,719,602	3,606,655	3,271,257	6,351,596
매출액	690,472	1,035,271	945,223	665,313	606,908	860,016
영업이익	△1,106,522	△626,653	△289,142	△441,558	△719,779	△743,949
영업외수익	25,596	21,430	43,544	39,836	45,869	48,042
영업외비용	65,891	53,351	35,926	35,035	37,860	53,995
세전이익	△1,146,817	△649,097	△281,524	△436,757	△711,770	△749,902
당기순이익	△1,146,817	△649,097	△281,524	△436,757	△711,770	△749,902

[부표 50] 신용보증기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자체수입 등	합 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 및 독점 수입		
2005	50,000	-	-	-	-	7,615	158,255
2006	30,000	-	-	-	-	8,667	94,957
2007	20,000	-	-	-	-	14,955	188,197
2008	18,000	-	-	-	-	12,857	144,030
2009	80,000	-	-	-	-	22,673	284,842
2010	30,000	-	-	-	-	29,046	187,496

[부표 51] 신용보증기금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기타	지출합계
2005	-	870	4,274	-	153,111	158,255
2006	-	975	1,684	-	92,298	94,957
2007	-	1,077	2,684	-	184,436	188,197
2008	-	1,159	3,289	-	139,582	144,030
2009	-	1,163	6,269	-	277,410	284,842
2010	57,911	1,207	6,714	-	121,664	187,496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제3절 위험가중치

28.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익스포저)

가. 중앙정부(중앙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표준신용등급 ^{주)}	AAA~ AA-	A+~ A-	BBB+~ BBB-	BB+~ 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주: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26. 및 27.에 따른 매핑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같다.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OECD 국가신용도등급	0 ~ 1	2	3	4 ~ 6	7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익스포저 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

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다. 나.의 규정은 외국의 중앙정부 익스포저 중 현지통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에 준용한다.

29. (국제결제은행 등 익스포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에 대한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0.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저)

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저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저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28. 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1.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저)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내 공공기관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28.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4.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적용기관<개정 2008.2.21>
-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공공기관 평가 11-01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발 간 일	2011년 3월 29일
편 집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발 행 인	주영진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834
인 쇄 처	성지문화사 (TEL 02·2273·5090)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TEL 02·788·4834)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407-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1

